

# 주요국의 법정납본 법규 비교 연구\*

## Comparative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for Legal Deposit in Major Countries

조 용 완 (Yong Wan Cho)\*\*

### 〈 목 차 〉

I. 서론	III.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의 세부 사항
II.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 근거와 납본 기관	IV. 요약 및 결론

**요약:** 법정납본은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들의 법정납본에 관련된 법률과 명령, 규칙 등을 항목별로 비교하여 국내의 납본 관련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에 대한 검토와 함께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의 납본 법규와 납본 안내자료, 납본 수행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에 관한 법적 근거와 납본 기관에 대해 검토하고,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를 항목별로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사대상 국가별로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자료, 납본자료의 요건,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납본 미이행 벌칙, 납본 부수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에 대해 살펴보고자 각 국가별로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별 법정납본 법규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법정납본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법정납본, 법률, 명령, 출판물, 국가도서관, 한국

**ABSTRACT:** The legal deposit is a comprehensive and systemic method for acquiring a country's publications. This study aims to compare laws and regulations about legal deposit among several countries that have different histories and traditions and to supplement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s legal deposit. To do this, research papers and laws, regulations, guides, web sites and online systems about legal deposit of eight countries including USA,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France, Japan, Singapore, and Korea were reviewed. This study tried to compare and analyse several categories including publications to be deposited or not deposited, requirements, due dates, expenses, and numbers of copies for deposit, and penalty for noncompliance with legal deposit. Also, online publications to be deposited or not deposited, requirements and methods for deposit were compared and analysed. At last, some suggestions were also made for improvement in laws and regulations of <Library Law> in Korea.

**KEYWORDS:** Legal Deposit, Law, Regulations, Publications, National Library, Korea

\* 본 연구는 2020년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 관련 법령 정비 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yongwan@cu.ac.kr / ISNI 0000 0004 6484 6697)

• 논문접수: 2021년 8월 28일 • 최초심사: 2021년 9월 3일 • 게재확정: 2021년 9월 1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3), 369-393,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3.202109.36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법정납본(legal deposit)은 복본 형태의 출판물을 간행하려는 개인이나 상업적 또는 공공적 조직이 지정된 국가기관에 1부 또는 그 이상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정 의무를 의미한다(Lariviere, 2000, 3). 법정납본은 국가대표도서관이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출판물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당대에서 널리 활용함은 물론이고 후대로 전승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법정납본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537년 프랑스 국왕 프랑소와1세의 몽펠리에 칙령을 통해서이다. 이 칙령을 통해 왕은 왕실도서관에 출판물 1부를 최초로 납본하지 않으면 어떠한 도서도 판매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후 프랑스 혁명기간에는 자유의 명목으로 법정납본이 폐지되었다가 1793년에 저작권 취득을 위해 재도입되었다. 이후 1594년 벨기에, 1624년 독일, 1662년 영국, 1661년 스웨덴, 1697년 덴마크, 1702년 핀란드 등과 같이 유럽 국가들이 법정납본을 도입하였고(Lariviere, 2000, 6-7), 현재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 법정납본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납본제도는 구한말 일제가 우리나라의 신문을 탄압, 통제하기 위해 이완용 내각이 1907년 7월에 공포, 실시한 <신문지법(新聞紙法)>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에는 매회 신문 발행에 앞서 내부대신과 관할 관청에 신문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납본 관련법이라 할 수 있다. 1909년에 제정된 <출판법>에도 문서와 도화를 출판할 때에는 즉시 제본 2부를 내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승민, 2019, 76). 이처럼 구한말의 납본 관련 법률들은 프랑스에서 최초 도입된 납본 칙령과 같이 사전검열을 목적으로 한 법률임을 잘 알 수 있다.

도서관에 의한 법정납본이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63년 <도서관법><sup>1)</sup>인데 이후 1994년 <도서관 및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었다가 2006년 <도서관법>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법정납본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이승민, 2019, 76). 현행 <도서관법>의 법정납본 관련 조항은 2009년 3월 25일 일부개정(시행 2009. 9. 26)을 통해 재정비된 것으로, 2009년 개정은 이전과 달리 도서관자료의 개념에 온라인자료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납본 대상에서는 제외되었고, 장애인을 위한 독서자료 등의 제작과 배포를 위한 디지털파일의 납본이 도입되었다. 이후 2016년 2월 3일 개정을 통해 온라인 자료 중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디지털 파일의 납본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0년 12월 22일에

1) 이 <도서관법>은 1988년 2월 28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을 시행하기 전까지 25년간 원안 그대로 유지되었다(이재원, 2019, 59). 당시 납본 관련 조항은 제12조(도서관자료의 제공과 납본)에 포함되었으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발간 자료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였고, 출판사나 그 외의 자는 자료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납본한 자가 그 간행물에 대한 실비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당초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장애인용 도서를 위한 디지털파일의 납본 관련 조항이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는 대신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3항에 디지털파일의 제출 요청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몇 차례의 법정납본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서관법 상의 국가대표도서관에 의한 납본 규정에는 관련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법률적 미비점들이 노출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납본 자료의 품질에 대한 요건의 누락이나 유상 납본제도 하에서 온라인자료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요청,<sup>2)</sup> 납본 위반시 제재의 상대적 경미함,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 자료에 대한 납본 범위의 제한적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른 외국의 법정납본 관련 법령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국내 납본 법령의 미비점들은 보완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국가들의 국가대표도서관에 의한 법정납본에 관한 법령과 시행령, 규칙 및 납본 안내자료 등을 분석하고, 법정납본의 여러 항목별로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도서관법에 규정된 법정납본 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법정납본 제도에 관한 연구논문에 대한 검토와 함께 주요 국가의 법정납본 법규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률(law)과 하위법령인 시행령(regulation), 고시, 지침, 그리고 납본 수행기관(국가대표도서관)의 홈페이지, 온라인 납본시스템 등을 분석하였다. 관련 법규의 비교대상이 되는 국가로는 한국 외에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 총 8개국이 포함되었다.

##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가도서관에 의해 수행되는 납본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관련 연구들은 국가도서관의 납본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연구들과 디지털 및 온라인자료의 급증에 대응하여 납본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들로 구분되었다. 국가도서관의 납본 강화와 관련하여 노영희(2009)는 국가도서관에 의한 법정납본을 강화하여 납본율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납본 관련 법령들을 검토하면서, 주로 납본보상 여부, 미납본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 미납본의 경우에 대한 과태료 징수 절차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업무 자체 수행, 조직 내 납본과 신설 등 납본부서 강화, 해외 사례를 참고

2) 2008년 한 납본자는 1조원의 가치가 있는 책자를 납본하였다고 주장하며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2013년 한 출판사는 국회도서관에 2권의 도서를 납본하면서 책의 정가가 1,000조원이라며 납본보상금으로 1,000조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김나영, 오일석, 2016, 514). 국립중앙도서관의 담당자에 의하면, 일부 출판사들이 온라인자료의 제작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납본 보상금 청구를 목적으로 질적 수준이 낮은 전자책을 제작하여 납본하거나 시장가격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꽤 발생한다고 한다(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2020. 9. 24), 국립중앙도서관 담당자와의 면담 [인터뷰]).

한 납본지원시스템의 개발, 그 외 납본 업무의 합리적 개선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윤희운(2014)은 법정납본은 국가도서관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서개발 수단이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의 취약한 납본체제로 인해 자료 수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수집력 강화를 위해 국가도서관법 또는 납본법을 제정하고, 납본 지침과 기준의 추가적인 개발과 보완해야 하며, 납본주체의 확대, 납본대상 및 제외자료의 구체화 등을 포함하는 법 조문의 개선, 납본수집 대상자료의 합리적 유형화, 자료유형별 납본수집 범위의 최적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김나영, 오일석(2016)은 <도서관법>과 <국회도서관법>에 규정된 납본 보상금 제도에 초점을 두고 영국, 미국, 독일, 일본과 한국의 납본제도와 보상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은 현재 납본 관련 법규에 정당한 보상에 대한 정의가 없고, 두 법에 의한 납본의무와 보상규정이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두 법의 납본 법규에서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며, 납본 보상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의 전자출판물 납본에 초점을 둔 연구들 중 서혜란(2003)은 당시 기존의 납본 관련 법령이 인쇄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급증하는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그는 한국과 해외의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에 관련된 동향을 분석하여 조사대상 국가에서는 디지털자료를 납본대상에 포함하도록 납본법을 확대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당시 신설될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자료의 납본을 포괄하도록 하면서 장기적으로 관련 법안과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윤희운(2003)은 당시 국내 납본제도가 디지털 시대의 전자출판물 수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각 국의 납본 법제와 법령의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국내 납본법령에는 용어의 부적합과 편협성, 납본주체의 불명확성과 제한성, 납본처 난립에 따른 부담 가중, 대상자료 및 납본 시한의 모호성, 제재조항의 부재로 인한 법적 실효성의 약화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내 납본제도 개선을 위한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납본 관련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도서관법 제정, 통합형 납본법 제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보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재황, 곽승진, 김정택(2009)은 국가적으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 IFLA 납본 지침과 세계 주요 국가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을 파악하고 총 16개의 납본요소를 정리한 후 납본 관련 이해당사자와 법조계, 출판계, 도서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와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곽승진 외(2013)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내외의 관련 법령 및 사례의 분석, 디지털자료의 유통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디지털 납본 이해당사자와 면담,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그리고 법조계, 출판계, 도서관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로 이들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 요소

14개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납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승민(2019)은 <국회도서관법>에 의한 납본 중 학위논문의 디지털 파일 납본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납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학위논문 담당 인력의 부족, 여러 기관으로의 중복된 학위논문 납본, 납본 절차의 번거로움, 저작권 동의서 확보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분산된 납본을 통합하는 국가적 납본법의 제정, 디지털 학위논문의 장기보존을 위한 국가적 아카이빙 방안 마련, 국가적 차원의 통합된 디지털 학위논문 납본시스템 개발, 국회도서관 차원의 학위논문 전문 컬렉션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존의 관련 연구들은 세계 각국의 납본 법령과 제도를 분석하여 납본 보상제도 개선, 미납본에 대한 제재 조치,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수집 강화 방안 등에 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른 연구들은 기존의 매체와 다른 특성을 가진 디지털자료, 특히 온라인자료의 납본에 관한 법령과 제도, 관련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 각국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 수행하는 법정납본 관련된 법령에 대한 분석하여 국내 도서관법의 납본조항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 II.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 근거와 납본 기관

### 1. 한국의 납본 관련 법규

우리나라는 <도서관법>에 납본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하에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서 법정납본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sup>3)</sup> 구체적으로 제1항에는 납본의 의무와 대상자, 납본 기한 등에 대해, 제2항에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파일 형태의 납본 의무에 대해, 제4항에는 납본한 자에 대한 납본 증명서 발급과 납본자료에 대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당초 장애인을 위한 자료제작과 서비스 등을 위한 디지털파일 납본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20조 제3항<sup>4)</sup>이 존재하였으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산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로 변경되면서 2020년 12월 22일자로 이 조항은 법 개정과 함께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치 등) 제3항으로 이동하였다.<sup>5)</sup>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는 법에서

3) 동법 제20조의2(온라인자료의 수집)는 납본 조항은 아니며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자료 수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 “국립중앙도서관은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파일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5)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제2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위임한 납본대상 도서관 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부수와 납본 절차 및 보상에 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는 납본절차에 서 요구되는 납본서와 납본증명서, 납본에 따른 보상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다.

법정납본 업무를 총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자체적인 규정과 지침, 고시 등을 통해 납본에 대한 실무적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66호, 2019. 6. 1],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수집과, 2020. 8. 5],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11-1호 수집대상 온라인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등이 포함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법>에 의한 납본 외에 <국회도서관법>에 의해 국회도서관으로의 납본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에 의해 공공기관과 민간(온라인 자료는 제외)이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등은 납본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납본으로 법률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납본과 유사한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35조(영화필름등의 제출)는 영화제작업자가 영상물등급 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 받은 경우,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 디스크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국가대표도서관에 의한 법정납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고, 이 2개의 법률에 의한 납본 또는 납본 유사기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 주요국가의 납본 관련 법규

본 연구의 조사대상 국가들은 모두 법률에 납본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지만, 국가별로 법률의 성격은 조금 상이하였다. <표 1>과 같이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도서관법 또는 국가도서관법에, 미국과 호주는 저작권법(Copyright Law 또는 Copyright Act)에, 프랑스는 문화유산법(Code du patrimoine)<sup>6)</sup> 내에 납본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영국은 납본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었다.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법률에는 납본의 목적, 원칙, 핵심적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regulations)과 고시, 지침(guides)에는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납본 대상이 된 온라인자료의 납본을 위한 세부 사항은 대체로 시행령, 지침, 고시 등에 명시되어 있다.

---

제출하여야 한다.”

6) 프랑스 법체계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정부(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을 함께 엮어 '법전' 형태로 편찬한다. L.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는 법률에 해당하며, R.이라고 시작하는 일련번호는 시행령에 해당한다. 프랑스 국가도서관 관련 법규는 문화유산법 내에 포함되어 있다.

〈표 1〉 국가별 납본 관련 법적 근거

국가	납본의 법적 근거
한국	-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국립중앙도서관규정 제566호, 2019. 6. 1] -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수집 지침[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2020. 8. 5] - 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11-1호 수집대상 온라인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미국	- Copyright Law § 407 Deposit of copies or phonorecords for Library of Congress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sup>7)</sup> Title 37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sup>8)</sup> 중 Part 202 - Pre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of Claims to Copyright §202.19 Deposit of published copies or phonorecords for the Library of Congress §202.24 Deposit of published electronic works available only online
호주	- Copyright Act 1968, Division 3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Guide to requirement for publisher 2016(호주국립도서관의 전자출판물 납본 안내자료)
일본	-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제25조의3 -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출판물 납입에 관한 규정 -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출판물 납품에 관한 규정 제1조에 규정된 국가의 여러 기관이 납입해야 할 출판물의 부수에 대하여 -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출판물의 대상금액에 관한 건 -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 자료의 기록에 관한 규정 - 패키지 전자출판물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량판 결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건 (2000년 9월 27일 국립국회도서관고시 제3호)
영국	- 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 - The Legal Deposit Libraries (Non-Print Works) Regulations 2013
캐나다	-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의 10 - Legal Deposit -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SOR/2006-337)
프랑스	- 문화유산법 내 TITRE III: DÉPÔT LÉGAL (Article L131-1 ~ Article L133-1) - 시행령 TITRE III: DÉPÔT LÉGAL (Articles R131-1 ~ R133-1-1)
싱가포르	- National Library Board Act (Chapter 197) Part II Section 10

### 3. 납본 수행기관

조사대상 국가들의 납본 기능은 〈표 2〉와 같이 각 국의 관련 법률에 의해 납본도서관으로 지정된 국가대표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국가대표도서관을 운영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National Library Board)에서 납본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 성립의 특수성과 납본제도에 관한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납본도서관은 영국국가도서관(British Library, 이하 BL)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 웨일즈국립도서관, 옥스포드대 보들리안 도서관, 캠브리지대 도서관, 그리고 아일랜드의 더블린대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 등 총 6개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프랑스는 매체의 유형에 따라 납본 수행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였는데, 프랑스국가도서관

7)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은 연방정부가 제정한 행정명령을 수록하고 있다.

8) 미국의회도서관 산하 저작권국이 제정하는 연방규정으로, Circular96라고도 함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이하 BnF)이 대부분의 자료에 대해 납본 업무를 수행하지만, 영화관에서 상영된 영화와 그에 파생된 영상자료들은 프랑스국립영화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가, 녹음자료와 라디오, TV방송 관련 자료는 국립시청각연구소(l'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에서 분산하여 납본을 수행한다. 또한 프랑스 수도권 이외 지역의 납본의무자를 위해 지역의 도서관을 지정하여 BnF로의 납본도 지원하고 있었다.

〈표 2〉 국가별 납본 기관

국가	납본 기관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미국의회도서관(산하 저작권국)
호주	국립호주도서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영국	BL + 스코틀랜드국립도서관 + 웨일즈국립도서관 + 옥스포드대 보들리안 도서관 + 캠브리지대 도서관 + 더블린대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BL 외 타 5개 납본도서관은 The Agency for the Legal Deposit Libraries가 대행)
캐나다	국립캐나다도서관및기록관
프랑스	BnF + 프랑스국립영화센터 + 국립시청각연구소 (BnF으로의 납본: 프랑스 수도권(Ile-de-France)지역의 개인과 법인은 BnF로, 그 외 지역의 개인과 법인은 문화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관을 통해 BnF로 납본)
싱가포르	국가도서관위원회(산하 국가도서관)

### Ⅲ. 주요 국가별 법정납본 범규의 세부 사항

#### 1. 납본 대상 자료

조사 대상 국가의 납본 대상 자료를 살펴보면, 전통적 납본 대상이었던 인쇄자료(도서, 연속간행물 등)와 전통적 비인쇄자료(마이크로 자료, 음반 등) 외에 시청각자료(방송, 영화 등)와 디지털 자료(온라인 형태의 자료와 매체에 고정된 디지털 자료) 등도 납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납본 대상 자료의 범위는 인쇄자료를 넘어 온라인 매체까지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 대상 국가들 대부분이 〈표 3〉과 같이 납본 대상 자료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특히, 프랑스는 상영된 영화, 홍보/교육용 비디오, 지상파방송까지도 납본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은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거의 모든 출판물들을 기본적으로 납본 대상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였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료들도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범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납본 대상에 포함되었다. 다만, 이 경우, 납본 대상이 과도하여 납본 기관과 납본의무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 국가들은 일종의 제한조치



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캐나다는 시행령을 통해 납본기관장이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에만 납본의무가 발생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표 3〉 국가별 납본 대상 자료(관련 법규 요약)

국가	납본 대상 자료
한국	-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3조 제1~2항: 도서, 연속간행물 /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際式) 자료 / 마이크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 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장관 인정 필요),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받은 온라인자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송신되는 자료)
미국	- 법 §407 (a): 납본 제외 대상 이외의 미국 내 발행된 저작물
호주	- 법 195CE 국가도서관자료(National Library material)는 납본 대상: 문학, 희곡, 음악, 예술 저작물 또는 이러한 저작물의 다른 판형(edition)으로 전자 또는 다른 형태인 경우이면서 특정 조건 <sup>9)</sup> 을 구비
일본	- 법 제24조 1항: 1 도서 2 책자 3 연속 간행물 4 악보 5 지도 6 영화 필름 7 전 각호에 게재된 것의 외, 인쇄 기타 방법으로 복제 한 문서 또는 도화 8 축음기 용 레코드 9 전자적 방법, 자기적 방법 다른 사람의 지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자, 그림, 소리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것
영국	- 법 제1조와 제5조 인쇄 출판물: (a) 도서(팸플릿, 잡지, 신문을 포함) (b) 활판인쇄물 또는 악보의 낱장 (c) 지도, 도면, 차트 또는 도표 (d) 위 저작물의 일부 등 비인쇄 저작물: 규칙에서 정하는 저작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해당하나 녹음물 또는 필름, 부수적 자료 등은 제외
캐나다	- 법 2조 출판물: 인쇄, 온라인, 녹음/녹화물 등 어떠한 매체나 형태 포함 규칙 제4조: 납본기관의 서면 요청시 납본대상이 되는 항목에 거의 모든 매체를 포괄
프랑스	- 법 L131-2조: 공중에게 전달되는 경우 납본 대상, 인쇄, 그래픽, 사진, 음반, 시청각, 멀티미디어 자료, 소프트웨어와 DB, 전자자료(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 등: 프랑스 국가도서관으로 납본 - 시행령 R132-26조의 영화관 상영 영화자료와 제R132-30조 6부 이상 대중에 배포되는 광학매체 비디오자료와 정보/교육/홍보용 비디오자료 등: 국립영화영상센터로 납본 - 시행령 R132-34조 프랑스 지상파 TV, 라디오, 지상파 VOD 등 시청각자료와 녹음자료, R132-41조 온라인자료 중 지상파방송에 활용된 자료 등: 국립시청각연구소로 납본
싱가포르	- 법 제10조 제1항 도서관자료(인쇄/전자 형태의 도서/연간물/신문/팸플릿/악보/지도차트 등 + 시청각자료(아날로그/디지털) 등), 단, 온라인자료는 납본대상에서 제외

## 2. 납본 제외자료

조사 대상 국가에서는 아래의 〈표 4〉와 같이 납본 대상 자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료들을 납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다. 납본 제외의 주요 근거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국가 대표도서관에 납본할만한 가치나 중요도, 출판물의 생산수량, 납본시 출판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 여부, 이미 납본된 동일 자료와의 차별성, 개인정보와 비밀 여부, 저작권 침해, 매체의 특수성(시청각자료와 온라인자료) 등으로 나타났다.

9) (a) 해당 저작물 또는 다른 판형(edition)이 웹사이트, 웹페이지, 웹파일, 도서, 정기간행물, 신문, 팸플릿, 악보, 지도, 도면, 차트, 도표 또는 주무장관에 의해 지정된 것 (b) 저작권이 존속할 것 (c) 대부분 시각-청각이 아닐 것 (d) 다른 판형의 경우, 해당 판형이 텍스트 또는 다른 읽을 거리, 삽화, 그림, 판화, 사진, 시청각 등의 요소가 추가 또는 대체되어야 하며, 최소 1개 이상의 추가나 대체된 콘텐츠가 이전의 어떤 판형에 포함되지 않을 것

구체적인 납본 제외의 유형에는 상업용 광고/홍보자료, 업무처리에 발생하는 트랜잭션 레코드, 개인적인 자료 등과 같이 납본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 소량한정판 등과 같이 소량으로 출판되어 납본시 납본의무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자료, 동일한 매체로 내용의 변동없이 출간되는 재쇄(중쇄)자료, 시청각 자료와 이에 부수되는 자료(영상, 녹음자료), 행정기관이나 선거 관련으로 생산된 자료, 저작권을 침해한 자료, 개인정보나 비밀이 포함된 자료, 온라인자료 중 납본가치가 떨어지는 자료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되었다.

〈표 4〉 국가별 납본 제외자료(관련 법규 요약)

국가	납본 제외자료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온라인자료는 제외</li> <li>-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납본수집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본자료, 재쇄(중쇄)자료, 원문DB 구축자료</li> <li>• 일반 자료형태가 아니거나 내용이 거의 없는 자료(다이어리/스티커북/그림연습장 등)</li> <li>• 미제본형 일회성 자료(활용 후 가치가 소멸되는 자료)</li> <li>• 학원교재 및 강의자료로 정답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방문학습 교재</li> <li>•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등이 발행·제작한 저작물</li> <li>• 창작물이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를 표지/판권지 등을 달리하면서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제작한 자료</li> <li>• 통상적인 자료의 판매가격 책정 방식을 미적용한, 가격이 현저히 고가인 자료</li> <li>• 주로 광고/판촉/상품정보를 게재한 자료</li> </ul> </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407 (c): 저작권국장은 규칙을 통해 특정 범주의 자료를 납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부의 납본을 요구할 수 있음. (i) 저작물을 5부 미만으로 발행하거나, (ii) 저작물이 번호가 매겨진 한정판으로 발행하여 그 복제물 중 최선판 2부를 강제로 납본하게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불공정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경우에는 납본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대안적인 납본방법을 정해야 함.</li> <li>- 시행령 Title 37 §202.19: 건축/공학 도면, 축하카드, 그림엽서, 개인적으로 발표한 강의, 설교, 연설, 상품, 작품 제작, 서비스 등에 대한 임대, 대여, 라이선스 또는 판매에 관해 출판된 인쇄물, 라벨, 기타 광고물품 등은 제외</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95CE조: 저작권이 없는 자료, 대부분 시각-청각인 자료</li> <li>-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음성/영상자료(녹음, 비디오, 필름), 주로 게임 자료, 주로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 저작권 침해 자료, 비밀자료, 인터넷처럼 사적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자료, 특정 그룹의 사람만 접근가능한 개인정보로 구성된 자료, 업무상 트랜잭션 레코드(DB 등)</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4조: 기밀, 서식, 편지지, 기타 간단한 것은 제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li> <li>- 법 제25조4, 부칙 제2조: 민간의 온라인자료 중 도서관 연속간행물이 아닌 자료, 유료인 자료와 DRM이 있는 자료 등</li> <li>-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출판물 납입에 관한 규정: 영화필름은 당분간 납본 면제</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조: 녹음물, 필름 또는 양자 모두 그리고 그에 부수적인 다른 자료</li> <li>- 법 제2조: 동일 매체로 이미 출판된 저작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저작물</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의 납본 제외자료에 대한 규정은 없음. 단, 규칙 제4조에 관장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만 2부를 납본해야 하는 대상의 대부분이 납본 가치가 떨어지는 유형(거래 카탈로그, 광고, 홍보자료, 안내문, 가격표 등)</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R132-2 1.지자체(시, ville), 상업 또는 행정 관련 인쇄자료 2.선거법상 선거기록, 3.100부 이하로 수입된 자료 4.30부 이하로 수입된 약보/무용보 5.납본된 문헌에 수반된 인쇄, 그래픽, 사진자료 6.특허, 산업 디자인/모형 7.사진 모음, 신문 기사나 다른 텍스트의 복제물 8.납본자료의 동일한 재인쇄물 9.국가의 분산화된 서비스, 식민지 영토 대표단, 전국적 단위가 아닌 공공기관, 식민지 영토 자치정부 등의 행정 행위 자료</li> <li>- 시행령 R132-34 지상파 시청각 자료와 녹음자료 중 1.비영리단체가 허가받은 방송, 페이퍼뷰 방송, 텔레비전 홈쇼핑 등 2.비영리단체가 허가받은 라디오, 독립적인 지역/지방/주제 관련 라디오</li> </ul>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10조: 온라인자료는 제외</li> <li>- 국가도서관위원회 홈페이지<sup>10)</sup>: 실질적 텍스트가 (거의) 없는 자료(양식/달력 등), 개인적 또는 비밀 자료, 기관내부 자료(매뉴얼, 회의록 등), 불완전 문서나 완전한 출판물이 없는 초록/요약/목차/첨부자료/부록 등, DB나 웹기반 어플리케이션, 특허, 사진/그림, 사용되지 않은 영화 장면이나 방송목적 자료 등</li> </ul>

### 3. 납본자료의 요건

조사대상 국가들 중 한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표 5>와 같이 납본되는 자료가 가져야할 기본 요건들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 요건들 중 최선판(최량판, 최선본, best edition)은 납본 대상 자료가 가장 우수한 품질의 복제물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다른 요건인 완전본(complete copy)은 납본 대상 자료가 본품 이외에도 부속품 등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등에서 적용되었다.

<표 5> 국가별 납본자료의 요건(관련 법규 요약)

국가	납본 자료의 요건
한국	관련 규정 없음
미국	- 법 §407 (a) (1) 최선판의 완전한 복제물 2부(2 complete copies of the best edition) (2) 최선판의 완전한 레코드판 2부 - 시행령 Title 37 §202.19 공표된 복제본과 음반의 납본: (1) 저작물의 최선판(The best edition of a work) (2) 완전한 복제본(A complete copy)
호주	- 법 195CD: 해당 간행물 전체와 동일한 복제물(a copy of the whole of the material) + 전자적 형태는 기술적 보호조치 제거, 접근에 필요한 S/W나 다른 정보(내장 컴퓨터 스크립트 등)를 동반 + 인쇄본(hardcopy)은 공중에게 제공되는 최선본과 같은 방법으로 마감 및 채색되어야 하며, 제본 또는 바느질, 스티치, 집착 등이 필요
일본	- 법 제25조: 최량판(最良版, best edition)의 완전한(complete copy) 1부 - 민간 생산의 오프라인 자료에 적용
영국	- 법 제4조: 인쇄출판물(BL) - 최선본(best copies)과 동일한 품질의 저작물 - 법 제5조: 인쇄출판물(타 5개 납본도서판) - 최대 발행 복제물(largest number of copies)과 동일한 품질의 저작물 - 시행령 제15조: 납본되는 복제물은 저작물 보존을 위해 최적의 품질을 가져야 함
캐나다	- 법 제11조 1항(Providing archival quality copy): 녹음/녹화자료 중 관장이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기록물 보존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해당 요청서에 명시한 형태와 품질의 복제물을 제출
프랑스	- 시행령 R132-8: 납본 복제물은 완전한 품질(최선판)로, 유통되는 것과 동일해야 함 - 시행령 R132-13: S/W와 DB의 납본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통해 제출, 발송하며, 해당 제품과 관련된 문서도 함께 제출. S/W와 DB의 납본은 완전한 품질(최선판)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 - 시행령 R132-21: 녹음자료, 비디오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은 대중이 사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제출하거나 발송하며, 해당 제품과 관련된 문서도 함께 제출. 납본자료와 관련문서는 완전한 품질(최선판)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동일. 납본자료에 수반되는 특히, 포켓, 상자, 제본, 설명서 등은 납본에 반드시 포함. - 시행령 R132-27, R132-30~31: 납본되는 상영 목적의 영화, 광학 매체에 고착된 비디오자료와 정보, 교육 또는 홍보 용도의 비디오자료의 복제물은 완전한 품질(최선판)로, 유통되는 것과 동일해야 하며, 납본시 시놉시스와 기술적 자료 시트(fact sheet)를 동반. 영화관 상영 영화는 보도자료, 홍보자료, 특히 광고영상, 포스터, 사진 등을 포함
싱가포르	관련 규정 없음

납본자료의 요건에 대한 국가별의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문화유산법 시행령에서 납본 자료의 매체 유형별로 최선본과 완전본의 요건을 각각 규정하였다. 미국도 시행령인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서 저작물의 최선판(the best edition of a work)은 미국의회도서관이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한 판형이며, 완전본(a complete copy)은 해당저작물의 최선판

10) National Library Board (2021. 8. 30.). Deposit Portal. 출처: <https://www.nlb.gov.sg/Deposit/About/LegalDeposit>

출판단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였다.<sup>11)</sup> 그리고 일본은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의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최선판 결정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건〉(2000-09-27 국립국회도서관 고시 제3호) 제2조 최선판의 결정기준(패키지계에 한해 적용)에서 최선판의 세부 요건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sup>12)</sup> 캐나다의 경우, 납본자료 요건을 일반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는 녹음/녹화 자료는 국립캐나다도서관및기록관장이 정한 형태와 품질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영국도 BL과 다른 5곳의 납본기관에 납본되는 자료는 최선본이자 최적의 품질이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호주에서도 납본 자료는 실제 출판물과 동일하도록 삽화, 사진, 시청각요소 등을 포함하는 완전본이자 최선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전자출판물과 인쇄자료에 맞는 세부사항들도 제시하였다.

#### 4.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

조사 대상 국가들은 납본 의무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납본 기한을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었다. <표 6>을 살펴보면, 이들 국가 중 출판 이후 1개월(또는 4주) 정도가 보편적이었는데, 한국, 호주, 일본(민간이 출판한 경우에 한함), 영국, 싱가포르 등이 해당하였다. 납본 기한이 가장 빠른 경우는 프랑스와 일본이었는데, 프랑스는 BnF에 납본하는 대부분의 자료를 대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시점에 즉시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단, BnF 외 2개 기관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는 자료의 특성에 따라 15일~2개월(최대 6개월) 정도의 납본 기한을 정하였다. 일본도 정부, 지자체, 각종 공공법인 등이 출판한 경우, 출판 즉시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간 영역(출판사 등)에서 출판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캐나다의 경우, 보통 대중이 이용가능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납본해야 하며, 일반적이지 않은 소규모 생산 자료나 비정형적인 출판물 등은 납본 기관장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지정한 기간 내에 납본해야 한다. 끝으로 미국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납본 기한이 가장 긴 편이었다.

납본 비용과 관련하여 조사 대상 국가들은 크게 보상주의와 무보상주의(자비 부담)로 구분되었다. 먼저, 보상주의를 택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었는데, 두 나라 모두 법에 근거해 납본의무자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 중 한국은 납본 자료의 시가(市價)로 보상하도록 한 반면, 일본

11) 예를 들어, 완전한 음반은 음반 외에 음반 커버, 속 커버, 가사집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2) 패키지계의 최선판 요건은 (1) 기록매체의 보존성이 뛰어날 것 (2) 기록매체가 격납된 용기가 있을 것 (3) 보관을 위한 특수한 시설이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4) 이용에 관한 설명서 또는 해설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 (5) 기록매체의 규격 또는 해당 패키지계 전자출판물의 해당 판을 이용하기 위한 기기의 규격이 보급되어 있을 것 (6) 특별한 기능이 부가되어 있을 것(단, 특별한 기능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부가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기능이 부가되어 있지 않을 것) 등과 같다.

은 매체별로 다르나 시가의 절반 내외 보상금을 책정하고 여기에 납본 소요 비용을 더해 보상하고 있다. 양국의 보상금액은 일본의 납본 소요 비용을 고려하면 한국의 보상금액이 조금 더 많거나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국가들은 납본을 출판자의 의무적 행위로 간주하여 납본의무자의 자비 부담으로 납본하도록 하는 무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관계법령에는 자비 납본이나 납본 보상 등에 대해 명확히 기술되지 않았고, 납본시 무료 우편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만 제시되어 있지만 BnF의 납본안내서에는 자비 납본을 명시하고 있다.<sup>13)</sup> 캐나다도 일반적인 경우에 납본은 자비로 수행되지만 녹음 및 녹화자료 중 납본기관장이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납본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납본 비용을 실비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표 6〉 국가별 납본 기한과 납본 비용(관련 법규 요약)

국가	납본 기한	납본 비용
한국	- 법 제20조 제1항: 1개월 이내	- 법 제20조 제4~5항: 납본 자료의 전부/일부가 판매용이면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 - 시행령 제13조의 4: 납본 자료의 시가에 이용자 열람에 제공되는 납본 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
미국	- 법 §407 (a): 3개월 이내	- 법 §407(b)(1)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7 §202.19: 자비 납본
호주	- 법 195CB (1)~(2): 1개월 이내	- 법 195CD (1): 자비 납본
일본	- 법 제24조: 즉시(국가, 지자체, 독립행정법인, 국립대학 법인, 특수법인 등에서 출판한 경우) - 법 제25조: 30일 이내(민간에서 출판한 경우)	- 법 제25조 3항: 해당 출판물의 출판 및 납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납입하는 출판물의 대상금액에 관한 건(고시): 도서 40~60%, 점자 40~80%, 음반 40% 미만 금액, 마이크로자료 50~70% + 납본 소요 금액(운송료, 납입 일괄 대행사무 금액 1점당 50~70엔 등)
영국	- 법 제4조: 1개월 이내(BL) - 시행령 제15조: 출판 전 또는 출판 후 1년 내 서면으로 납본 요청시, 그 후 1개월 내(그 외 5개 납본도서관)	- 법 제1조 제1항: 자비 납본
캐나다	- 법 제10조: 이용가능한 날부터 7일 내(단, 소규모 생산, 비정형 출판물 등은 관장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해당요청서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	- 법 제1조 제1항: 자비 납본 - 법 제11조 제3항: 단, 녹음/녹화자료 중 관장이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실비 보상
프랑스	- 시행령 R132-4~39: 대부분 자료들은 이용가능한 시점에 즉시 납본. 상영된 영화는 2개월, 광학매체 영화와 교육/홍보 비디오자료는 1개월(1시간 미만 분량은 6개월), 지상파 TV/라디오는 공개 후 15일 내에 납본	- 법/시행령에 보상 언급 없음: 우편료 무료 - 법 L132-1조: 법정납본은 납본기관에 해당 문헌의 제한된 수의 복제물을 전달 또는 무료우편(free of postage)으로 배송하면 완료 - BnF 납본안내서: 자비 납본
싱가포르	- 법 제10조 제1항: 4주	- 법 제10조 제1항: 자비 납본

13) BnF의 납본안내서(GUIDE DU DÉPÔT LÉGAL)에는 출판물의 제작비용에 납본 복제물의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이윤 감소를 이유로 납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2019, 7).

### 5. 납본 미이행 벌칙

조사 대상 국가들은 <표 7>과 같이 납본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었다. 납본 미이행에 대한 벌칙은 크게 경미한 법규위반에 적용되는 행정법상의 제재인 과태료 처분(한국, 일본, 호주 등)과 형법상의 형벌 중 하나인 재산형에 해당하는 벌금 처분(미국,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 그리고 법원에 소송 제기(영국) 등과 같이 구별되었다. 벌금 처분을 하는 국가에서도 납본 미이행을 중범죄라고 인식하지는 않기에 벌금 미납시에도 구금이나 기소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법원 등을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한을 정해 납본 준수를 명령하여 벌금 판결을 유예하기도 하였다.

납본 미이행으로 인한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살펴보면, 영국이 가장 적고(단, 납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이어 일본(소매가의 5배)과 한국(정가의 10배), 미국(250달러 이하, 약 29만원 고의, 반복 미이행시 약 290만원 추가 벌금), 호주(2,100호주달러, 약 180만원), 싱가포르(최대 5,000싱가포르달러, 약 430만원), 캐나다(10만 캐나다달러, 약 9,350만원), 프랑스(75,000유로, 약 1억 3백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 납본 미이행에 대해 최대 1억원 전후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납본을 강제하고 있었다.

<표 7> 국가별 납본 미이행 벌칙(관련 법규 요약)

국가	납본 미이행 벌칙
한국	- 법 제47조: 과태료는 자료 정가(비매자료는 자료의 원가)의 10배의 금액 이하
미국	- 법 §407 (d): 저작물당 250달러 이하의 벌금 + 요구된 복제물/음반의 소매가 총액(소매가 미정시 의회도서관이 해당 저작물 취득에 지출한 비용) 납본청구를 고의적 또는 반복적 미이행 또는 거부시 위에 추가로 2,500달러의 벌금
호주	- 법 195CB: 10 과태료 유닛(penalty unit) = 2,100 호주달러 <sup>14)</sup> - 법 195CG: 주무장관은 온/오프라인 납본 위반자가 기소 대신 연방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가능. 과태료는 법원이 해당위반에 대해 위반자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의 1/5과 동일
일본	- 법 제25조의 2: 정당한 이유없이 미납본 시 과태료는 출판물 소매가의 5배(민간 영역)
영국	- 법 제3조, 제7조: 납본의무 준수 명령을 내리도록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 출판자가 납본의무를 준수할 수 없거나 기타 사유로 납본준수 명령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납본 완수 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도서관에 지불하도록 명령 가능
캐나다	- 법 제20조: 즉결심판(summary conviction)을 통해 벌금 처분(개인은 5천 캐나다달러 이하, 법인은 10만 캐나다달러 이하) 단, 벌금 미납은 구금의 대상이 아님(관할법원이나 의회법이 정한 수단에 의해 징수)
프랑스	- 법 제L133-1조: 미납본시, 75,000유로 벌금. 단, 피고인에게 지정 기한 내 납본 준수를 명령하여 판결 유예 가능 - 시행령 R133-1: 5급 위경죄(경범죄) 위반으로 납본 과정의 실수에 대해서도 처벌 납본 신고서 3부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 관련 조항에 규정된 문서, 명세서 등을 납본시에 동반하지 않은 자, 관련 조항에 규정된 의무 제출 정보(패스워드, 접근 키, 기술 데이터 등)를 납본에 동반하지 않은 자, 관련 조항에 규정된 납본자료의 품질 기준을 준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 등도 처벌
싱가포르	- 법 제10조 제3항: 미납본시, 최대 5천 싱가포르 달러(약 430만원) 이내의 벌금

## 6. 납본 부수

조사대상 국가들의 납본 부수에 관한 규정은 <표 8>과 같이 각 국가의 역사와 납본 관련 전통, 납본 대상 출판물의 유형과 속성, 출판물의 가치, 희소성, 납본 의무자의 유형 등에 따라 최소 1부에서 최대 30부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서관법 시행령에는 일반적인 납본의 경우, 2부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부를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1부를, 미국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2부, 특수 범주의 자료는 1부, 싱가포르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2부, 전자출판물은 1부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UK)은 여러 지역(country)으로 구성된 국가 형성의 특수성과 1709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정납본 도입 전부터 대학도서관과 출판업조합의 납본 유사제도 실시의 전통 등이 반영되어 현재 국가도서관을 포함해 총 6개의 도서관에 각 1부씩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표 8> 국가별 납본 부수(관련 법규 요약)

국가	납본 부수
한국	- 시행령 제13조제5항: 일반적인 납본(온라인자료는 제외이나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는 포함) 2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납본 3부(이 경우, 디지털파일도 납본 3부) <sup>15)</sup>
미국	- 법 §407 (a): 일반적인 납본 2부 - 시행령 §202.19의 (d)(2): 특정범주 자료(3차원 지도표현물, 영화, 5부 이하 출판물 또는 300부 이하 한정판 판매, 멀티미디어 키트 등)는 납본 1부
호주	- 법 195CD: 1부
일본	- 법 제24조~제25조: 국가 기관 30부 이하(공용, 외국 정부간행물의 교환, 기타 국제 교환용), 독립행정법인, 대학법인, 특수법인 등 5부 이하, 지방자치단체 중 도도부현과 시 5부 이하, 정촌 3부 이하, 도도부현과 시의 법인 4부 이하, 정촌의 법인 등 2부 이하, 그 외 민간의 일반적인 납본은 1부
영국	- 법 제1조: 6부(6개 납본도서관에 각 1부씩)
캐나다	- 법 제10조(1): 일반적인 납본 2부(100부 이상 출판한 모든 인쇄자료, 모든 오디오북 포맷, 비디오 녹화물을 위한 물리적 매체, 악보 등. 출처: 홈페이지) - 법 제11조(1): 녹음/녹화자료 중 관장이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1부 - 시행령 제3조: (a)음악녹음자료 (b)서로 다른 포맷으로 2개 이상의 물리적 부분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출판물 (c)제작부수가 100부 이하인 출판물 (d) 100부 이하로 제작된 출판물의 마스터 복제본을 통해 주문생산한 자료 (e)온라인출판물 등은 1부 - 시행령 제4조: 관장이 서면 요청한 자료(4부 미만 생산, 행사 프로그램, 광고자료, 운행시간표 등 납본 가치가 적거나 소규모로 생산된 자료 등)는 2부
프랑스	- 시행령 R132-4: 일반적인 납본 1부 - 시행령 R132-12~42: S/W와 DB는 2부(수입은 1부), 녹음/비디오/멀티미디어자료는 2부(수입은 1부), 상업목적 영화가 디지털이면 2부, 광학매체 비디오자료와 교육/홍보용 비디오자료는 1부, 지상과 TV와 라디오는 완전히 납본(뉴스, 광고방송, 매거진 프로그램 등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는 자동수집(최소 1년 1회, 불가시 납본 요청) 등
싱가포르	- 법 제10조 제1항: 일반적인 납본 2부, 전자출판물은 1부(온라인자료는 납본 제외)

14) 호주의 벌금 부과 금액단위인 페널티 유닛 2017년 7월 발표 기준으로 1유닛=210호주달러임(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8. 1.), 개인정보보호 법률 체계, 출처: [https://www.privacy.go.kr/pic/nation\\_australia.do](https://www.privacy.go.kr/pic/nation_australia.do))

15)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도서관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었는데, 구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용 디지털파일의 납본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다.

반면, 일본은 납본 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납본 부수를 차등화하고 있다. 민간 영역의 일반적인 납본은 1부이지만, 국가 기관은 30부 이하, 독립행정법인 등은 5부 이하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도도부현과 시는 5부 이하이며 이들에 속한 법인은 4부 이하, 정촌 등은 3부 이하이며 이들에 속한 법인은 2부 이하로 납본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일반적인 납본은 2부이지만, 녹음/녹화 자료 중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어 관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나 소규모로 발행되거나 음악, 멀티미디어 출판물 등은 1부를 납본한다. 그리고 대부분 납본가치가 없지만 그 중 관장이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2부를 납본한다. 프랑스의 경우, 일반적인 납본은 2부이지만, 납본대상 출판물의 유형과 속성에 따라 1~2부를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7.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최근 디지털 기술의 보급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전자자료의 생산과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전자자료는 초기에는 매체에 고착된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자료(예를 들어, CD와 DVD 등)가 주류였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자료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물리적 형태를 가진 인쇄매체와 오프라인 전자자료와 달리 온라인자료는 무형성, 광범성, 가치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납본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각 국에서도 온라인자료를 납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민해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국가의 납본 관련 법령 등에서 온라인자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조사대상 국가들 중 대부분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온라인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온라인자료를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자료의 규모가 방대하고 대부분의 온라인자료가 납본할 가치가 없다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싱가포르에서는 온라인자료를 법정납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가적 수집 방식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자료를 납본 대상에 포함시킨 국가들도 납본 대상 온라인자료의 범위를 한정시키거나 납본이 필요한 경우, 납본기관장이 납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었다.

이 중 영국, 프랑스 등은 상당히 광범한 온라인자료를 납본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며,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도 포괄적으로 온라인자료를 납본대상으로 지정하였지만,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납본기관장이 납본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온라인자료에 한해서만 납본하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납본대상 온라인자료의 범위가 좁은 편이었는데, 한국은 온라인자료 중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SSN 등)를 받은 자료만 납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도서관법 제20조의 2(온라인자료의 수집) 제1~2항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국내 온라인자료에 대해 납본 대신 국립중앙도서관이 선정하여 수집,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간/개인이 온라인으로 간행된 도서나 연속간행물 중 국회도서관장이 지정하는 자료만 납본하는데, 국회도서관 납본 홈페이지에 의하면 특정 코드(ISBN, ISSN, DOI 등)가 부여된 것 또는 특정 포맷(PDF, EPUB,



DAISY 등)으로 만든 것 중 하나에 해당하고, 무상이며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없는 경우에만 납본 대상이 된다. 반면, 유상 판매 자료나 DRM이 있는 자료는 법 규정에 따라 당분간 납입 의무가 면제된 상태이다. 그 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자료는 국회도서관에서 납본이 아닌 수집 대상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표 9〉 국가별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관련 법규 요약)

국가	온라인 납본 대상 자료
한국	- 법 제20조제1항~2항: 1.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도서관자료 <sup>16)</sup>
미국	- 시행령 §202.24: 온라인에서만 이용가능한 공표된 전자적 저작물의 납본 (a) 저작권국장은 다음의 경우, 서면으로 1부를 납본 요청 가능 (1) 미국에서 출판되고 온라인에서만 이용가능한 전자적 저작물 (2) 2010년 2월 24일 이후 출판된 전자 전용(electronic-only) 연속간행물 (3) 2020년 12월 14일 이후 출판된 전자 전용 도서
호주	- 법 195CC: (a) 간행물이 출판되었고 (b) 온라인에서 이용가능하며 (c) 도서관장이 국가도서관장서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국가도서관이 요청한 것만 납본) <sup>17)</sup>
일본	- 법 제25조의4: 민간에서 간행한 온라인자료 중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해 관장이 정하는 것(무료 + 국제표준번호 부여 자료에 한함. 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 법 부칙 제2조: 유상 또는 DRM이 있는 자료는 당분간 납입 의무가 면제
영국	- 시행령 제13조: 법정납본이 적용되는 비인쇄저작물에 온라인 저작물 포함 - 시행령 제16조: 각 납본도서관은 요청한 온라인 저작물을 납본 받을 권리 보유(디지털 출판물 수집은 웹사이트/블로그/소셜미디어/전자저널/CD-ROM 등. 출처: BL홈페이지)
캐나다	- 법 제10조(1): 이용가능한 출판물(인쇄, 온라인, 녹음/녹화물 등 모든 매체와 형태 포함)은 납본 대상 - 시행령 제3조: 1부만 납본하는 자료 내에 온라인 출판물 포함 - 시행령 제4조: 관장의 서면 요구가 있을 시에 납본하는 대상에 전자토론그룹, 리스트서브, 게시판, 포털, 개인 웹사이트, 인트라넷 등 포함
프랑스	- 법 제L131-2조: 대중에게 전자적으로 소통될 목적을 가진 기호, 신호, 문서, 이미지, 음향 또는 메시지 등도 법정납본의 대상 - 시행령 R132-23: 도메인 네임이 .fr 또는 프랑스(인) 관련 웹사이트, 프랑스 내에 설립된 주문형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BnF 관할) - 시행령 R132-41 온라인자료 중 TV, 라디오에 의해 편집되거나 그 서비스의 프로그램에 활용된 인터넷 주문형 시청각 서비스(국립시청각연구소 관할) <sup>18)</sup>
싱가포르	- 법 제10조 제1항: 온라인자료는 납본대상에서 제외 <sup>19)</sup>

- 16) 최근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변경으로 인한 법 개정 과정에서 장애인용 자료의 디지털 파일 납본이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으로 변경되었다.
- 17)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Guide to requirement for publisher June 2016〉에 의하면, 온라인 출판물은 호주인이 자국 내외의 웹사이트에 공표한 자료로 아마존, Lulu 같은 해외 셀프출판 플랫폼에 호스팅된 작품들도 포함한다.
- 18) 프랑스의 납본 대상 온라인자료에는 기관/개인의 웹사이트, 유/무료 정기간행물, 블로그, 상업적 웹사이트, 비디오 플랫폼 또는 전자도서(개별적 수집하지 않고 정기 웹 하베스팅 중에 출판사 웹사이트에서 수집) 등이 포함되었다(Boring, 2018, 225-29).
- 19) 다만, 법 제7조(위원회의 권한) 제2항 (fa)에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싱가포르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온라인자료의 복제물을 위원회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시점과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8.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조사 대상 국가에서는 <표 10>과 같이 온라인자료 중 일부 자료들을 납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었다. 이 온라인자료들이 납본에서 제외되는 유형에는 개인적, 상업적 자료 등 납본 가치나 중요도가 낮은 자료, 기존 자료(온라인/오프라인)와 내용적 차별성, 개인정보와 비밀 관련 자료, 저작권 침해 자료, 시청각 또는 게임 등이 위주인 자료, 사적 네트워크(인트라넷, 토론그룹, 게시판 등)에서 공유되는 자료, 업무상 발생하는 트랜잭션 데이터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오프라인 자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납본 제외의 근거와 대부분 중복되지만 출판물의 생산수량과 납본시 출판자에게 불이익 등과 같이 아날로그적 성격은 제외되었다.

<표 10> 국가별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관련 법규 요약)

국가	납본 제외 온라인자료
한국	- 법 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자료와 발행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이외에는 온라인 납본 제외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제3조 2항 2. 온라인자료 가. 미리보기 등의 기능을 하는 체험판 또는 웹상에서 연재 중인 자료 나. 동일한 내용을 합본과 분책으로 발행한 경우 가독성과 보존·이용가치가 낮은 자료 다. 짧은 주기로 연속 발행되어 일반적인 개정판으로 볼 수 없는 자료 라. 출판물 자체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을 표시하지 않은 자료
미국	- 시행령 §202.19(c) 납본 면제 조건 (5): 미국에서 출판되고 온라인에서만 이용가능한 전자적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납본 면제(단, 시행령 §202.24에 따라 저작권국이 서면으로 납본 요청하기 전까지만 면제이며, 요청시에는 납본 의무 발생) - 시행령 §202.24 온라인 저작물의 납본: 저작권국의 납본 요청시, 2010년 2월 24일 이후 출판된 전자 전용(electronic-only) 연속간행물과 2020년 12월 14일 이후 출판된 전자 전용 도서는 납본 대상이나 그 이전에 발간되거나 전자 전용이 아니면 납본 제외
호주	- 법 195CE: 납본 대상인 국가도서관자료 중 (c) 저작물 또는 다른판형(edition)이 대부분 시각·청각이 아닐 것(온라인자료가 시청각자료인 경우는 납본 대상에서 제외) - 호주국립도서관의 전자출판물 납본 안내자료 3.1 납본 제외 출판물: 대부분이 음성/영상(녹음, 비디오, 필름), 게임 자료, 응용소프트웨어(application)인 자료, 저작권 침해 자료, 비밀자료, 인트라넷 등 사적 네트워크에서 공유되는 자료, 특정 그룹의 사람만 접근가능한 개인정보로 구성된 자료, 업무상의 트랜잭션 레코드(DB 등)
일본	- 법 제25조4: 기밀, 서식, 모형, 기타 간단한 것은 제외 - 법 부칙 제2조: 유상판매 또는 DRM이 있는 자료는 당분간 납입의무 면제 온라인자료 중 다음의 것은 납입 의무 대상에서 제외 • 간단한 것(각종안내, 블로그, 트위터, 제품카탈로그, 학급통신, 일기 등) / 내용에 증감변경이 없는 것 / 신청·승인 등의 업무가 목적인 것(전자상거래 등) / 종이책·잡지와 동일한 버전(디지털 자료 등)이 신청된 것 / 장기기용 목적으로 지워지지 않는 것(대학 기관 리포지터리 등) / 기술적으로 수집이 어려운 것(출처: 국회도서관 납본 홈페이지)
영국	- 시행령 제13조 2항 (a) 녹음물 또는 필름 또는 양자 모두 또는 그에 부수적인 다른 자료 (b)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제한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이용가능한 저작물 (c) 이 시행령 제정(2013. 4. 5) 전에 출판된 저작물
캐나다	- 법에 온라인자료 납본 제외의 규정은 없음. 단, 시행령 제4조에 관장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만 납본 대상인 납본 중요도가 낮은 온라인자료의 유형에 (x) 전자토론그룹, 리스트서브, 게시판, 전자우편의 토론 (y) 포털, 개인 웹사이트, 서비스 사이트, 인트라넷, 다른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구성된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는 웹사이트 (z) 동적 DB와 원천자료 등 포함 지역 차원의 소식지는 온라인 납본 제외(출처: 국립캐나다도서관기록관 홈페이지)
프랑스	- 법에 온라인자료 납본제외의 규정은 없음. 앞의 납본 제외자료 유형이 온라인자료에도 적용(시행령 R132-2 1항 및 시행령 R132-34)
싱가포르	-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제외

한편, 온라인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은 온라인자료 중 납본 제외 대상이 광범위하였다. 한국의 경우, 도서관법 규정에 의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 받지 않거나 발행자가 민간인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반면,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제외되는 특정 유형의 온라인자료 외에는 모두 납본 대상으로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제외 대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9.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보통 온라인자료는 전통적인 인쇄자료와 달리 다양한 재생과 이용을 위해 별도의 장치, 특정 기술, 재생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을 위한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동일한 자료일지라도 해상도, 음질 등의 품질도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자료는 납본과정에서 해당 콘텐츠만 납본해서는 안정적인 보존과 이용이 불가능하여, 추가적인 납본 요건들이 요구된다. 온라인자료를 납본하지 않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은 온라인자료의 납본요건을 규정하지 않았고, 그 외 국가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전통적 자료의 납본 요건과 유사하게 온라인 납본자료의 요건을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었다(〈표 11〉 참조).

〈표 11〉 국가별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관련 법규 요약)

국가	온라인자료의 납본 요건
한국	- 법에 요건 규정 없음(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온라인자료 납본 방법만 제시)
미국	- 시행령 §202.24 온라인 저작물의 납본: 기본적으로 최선판이면서 완전본을 납본. 단, 저작권국장이 LC 담당자와 협의 후 최선판과 완전본 요건 완화 가능
호주	- 법 195CD (c) 간행물이 전자적 형태일 경우, (i) 어떤 기술적 보호 조치로부터 자유로운 것(DRM 프리) (ii) 국가도서관이 간행물에 접근시 필요한 S/W나 다른 정보를 동반 - 호주국립도서관의 전자출판물 납본 안내자료: 최선판
일본	- 법에 요건 규정 없음. 온라인자료는 DRM이 없어야 하며, 동일자료가 다양한 형태로 출판될 경우, 최량판(보존을 위한 복제가 용이한 형식 등)을 납본(출처: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영국	- 시행령 제15~16조: 온라인 저작물은 보존을 위해 가장 적합한 품질로 납본 출판물의 이용과 보존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프로그램, 도구, 매뉴얼, 정보(메타데이터, 로그인절차, DRM제거 수단) 등도 함께 납본(출처: BL 홈페이지)
캐나다	- 시행령 제2조: 비인쇄자료 납본시, 출판물의 암호 해제, 보안시스템/장치 제거, 출판물에 접근가능하도록 제작된 S/W 복제물, 매뉴얼, 메타데이터 등도 같이 납본
프랑스	- 시행령 R132-23-1과 시행령 R132-42: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상파 TV와 라디오에서 활용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주문형 시청각서비스)를 자동화된 절차로 완전히 수집할 수 없는 경우, 납본대상자는 프랑스국가도서관(국립시청각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자료의 비밀번호와 액세스 키를 제공 또는 해당 자료의 복제본 제공. 납본대상자는 해당 자료의 전달과 장기 보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 자료를 제공. 납본기관과 납본대상자는 파일추출 절차를 공동 결정
싱가포르	-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제외

이들 국가에서는 온라인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가진 최선판(best edition)에

대한 요건과 온라인자료의 이용과 보존에 동반되는 각종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포함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한 완전본(complete copy) 요건을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완전본과 관련해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온라인자료에 부속되는 소프트웨어, 스크립트, 매뉴얼, 메타데이터, 로그인 절차(비밀번호, 액세스 키), 복제본 등의 제공과 함께 콘텐츠 이용을 가로막는 DRM이나 암호 등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를 명시하고 있었다.

### 10.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인쇄자료 등 전통적인 납본 대상 자료들은 물리적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납본기관으로 해당 자료를 송부하는 형태로 납본이 이루어지지만, 온라인자료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형태로 납본이 이루어지게 된다. 조사대상 국가에서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이 대체로 웹 하베스팅(자동수집) 방식과 국가대표도서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납본시스템으로의 전송, 파일전송 프로토콜인 FTP(File Transfer Protocol)을 사용한 전송, 메일을 통한 전송, 그리고 아날로그 매체처럼 물리적 매체(DVD, USB 등)에 저장하여 송부 등의 방식 등으로 구분되었다.

<표 12> 국가별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관련 법규 요약)

국가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한국	- 시행령 제13조제3항 온라인자료의 납본 방법 1.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여 수집하도록 조치(웹 하베스팅)
미국	- 시행령 §202.24(b): 온라인 전용 저작물의 복제본을 저작권국으로 전송
호주	- 법에는 납본 방법이 명시되지 않음. - 호주국립도서관의 전자출판물 납본 안내자료 6.2 온라인 전자 출판물: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자료는 웹 하베스팅 로봇에서 요청 발송 후 피요청 서버에서 자료 발송.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납본시스템(National edeposit service, NED) <sup>20)</sup> 또는 양측이 합의한 다른 수단으로 납본 NED 포털, 대규모 상업 출판사를 위한 FTP 납본, 메일 첨부(e뉴스레터) 등(출처: NED 홈페이지)
일본	- 법에는 납본 방법이 명시되지 않음. - 온라인자료(민간): 파일 및 메타 데이터를 다음 중 하나를 선택(① 자동 수집, ② 전송-국회도서관 송신시스템을 통해 파일과 메타데이터 납부, ③ 송부-DVD-R로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담아 발송)(출처: 국회도서관 온라인자료 수집 시스템 홈페이지)
영국	- 시행령 제16조: 온라인 저작물 납본은 출판자와 납본도서관 사이의 합의된 방법으로 납본하되, 그렇지 않으면 웹 하베스팅으로 납본
캐나다	- 법에는 납본 방법이 명시되지 않음. 다만, 온라인 납본 시스템에서 업로드(PDF와 EPUB 파일만 해당, 200M 이상 파일은 별도 연락 후 처리), FTP(많은 파일을 제출할 경우), 메일(연속간행물만 가능) 등의 납본 방법을 제공(출처: 국립캐나다도서관및기록관 홈페이지)
프랑스	- 시행령 R132-23-1 및 R132-42: 온라인자료 납본은 자동수집(자동수집 불가시, 복제본 제출 요구)
싱가포르	-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제외. 다만, 디지털 파일 납본을 위한 시스템(Deposit Web)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온라인자료를 웹 하베스팅에 의해 수집 실시

그 중 호주는 웹 하베스팅, 전송(업로드, FTP 포함), 메일, 양측이 합의한 다른 수단 등으로 납본할 수 있어 조사대상 중 가장 다양하였고, 한국과 일본은 온라인자료에 대해 전송, 송부, 웹 하베스팅 방식으로 납본이 가능하였다. 영국은 웹 하베스팅과 양측이 합의한 다른 수단으로, 캐나다는 전송(업로드, FTP 포함)과 메일로, 프랑스는 웹 하베스팅과 송부, 미국은 전송 방법으로 납본하고 있었다.

#### IV.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한국을 포함한 총 8개국의 법정납본 관련 법규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서관법> 내 납본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본되는 자료의 품질 요건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국가의 법정납본 관련 법령에는 납본자료의 품질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최선판(best edition)과 완전본(complete copy)의 개념이다. 즉, 납본을 통해 수집된 자료가 당대를 넘어 후대에까지 전송되기 위해서는 시판되는 것과 동일하게 우수한 품질을 가진 복제물인 최선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접근과 이용을 위해 전통적 인쇄 및 비도서자료, 매체에 고착된 디지털자료, 온라인자료 등은 본품 이외에도 상자, 부속품, 가사집, 매뉴얼, 보안장치, DRM 등과 같은 추가적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완전본이 납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관련 법규에는 납본자료의 품질에 대해 명시되지 않아 납본자료가 보존과 전송을 위한 최고 품질의 자료가 아니거나 자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들(예를 들어, 음반 CD의 경우, CD, 재킷, 가사집, 사진, 기타 부록 등) 중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향후 납본자료의 품질요건을 법령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법> 제2조(정의)에 최선판과 완전본을 정의하고,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조항에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를 “그 도서관자료의 최선판의 완전한 복제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자료에 대해서는 앞의 외국 사례에서 본 것처럼, 온라인자료의 장기보존을 위해 최고의 품질을 가진 최선판에 관한 요건과 S/W, 스크립트, 매뉴얼, 메타데이터, 로그인 절차, DRM이나 암호 등과 같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해제 등과 같은 완전본의 요건들을 정리하여 납본 관련 시행령 등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본 보상금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이 납본에

20) 호주 내 9개 국립 및 주립도서관이 참여하는 연방 및 주/준주 차원의 법정납본 시스템으로, 호주 내 출판된 전자 간행물에 대한 납본, 관리, 저장, 보존, 검색, 전송 등을 제공한다(National edeposit (NED) (2021. 8. 19.). What is National edeposit (NED)? 출처: <https://ned.gov.au/resources/about.html>)

대해 보상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무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연구들도 법정납본은 납본자에게 보상이나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Lariviere, 2000, 46). 하지만 국내 출판계의 여건을 고려하고 납본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당분간 또는 지속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타당하다(노영희, 2009, 187; 윤희윤, 2003; 최재황, 박승진, 김정택, 2009, 231). 이를 종합하면 현재 국내 출판계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현행을 유지하되, 법정납본의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보상금 감액이나 외국과 같이 법정납본에 대한 무보상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납본은 자비로 수행되지만 납본기관장이 역사적, 기록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에 대해서는 납본 비용을 보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최근 일부 출판사들이 온라인 출판물의 납본 보상금 청구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명시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도서관법> 제20조 제5항의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를 고쳐 후단에 “다만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온라인자료 중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정납본 미이행에 따른 벌칙 조항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국가들의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국내의 과태료 부과와 그 금액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완화된 벌칙임을 잘 알 수 있다.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법정납본 관련 법률은 강제 규정이어야 하며, 납본 미이행에 대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고(노영희, 2009, 187; 윤희윤, 2003, 47; 최재황, 박승진, 김정택, 2009, 231; Lariviere, 2000, 47), 중장기적으로 국내의 현행 과태료도 인상될 필요가 있다(윤희윤, 2014, 19). 하지만 국내 출판계의 열악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미국의 사례와 같이 고의적 또는 반복적 납본 미이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과태료 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21)</sup>

넷째, 납본되는 온라인자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국내의 납본 대상 온라인자료의 범위는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생산한 온라인자료에 국한되며, 발행자가 민간인 온라인자료는 납본에서 모두 제외되었다. 반면,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민간 영역의 다양한 온라인자료를 기본적으로 납본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물론, 납본 대상 온라인자료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납본자나 납본기관 모두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호주와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납본가치가 적은 온라인자료(오프라인에도 적용)에 대해 납본기관장이 서면 등으로 요청한 경우

21) 이를 위해 도서관법 “제47조(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해당 도서관자료 정가(그 도서관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발행 도서관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단에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자에게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에만 납본의무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민간 영역의 온라인자료 중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 한해 서면 요청에 의한 납본의무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내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온라인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온라인자료의 최신판의 완전본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와 같은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sup>22)</sup>

다섯째,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분산되어 있는 납본 법령과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납본법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도서관법>에 의한 납본 외에도 <국회도서관법>에 의한 납본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실상 납본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국교육학술정보원도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논문 등에 대해 납본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 국가 내에서 여러 기관들이 납본을 실시하는 것은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처럼 특수한 것은 아니다. 전술한 외국 사례를 참조하면, 영국은 국가 형성의 특수성과 납본 관련 역사와 전통으로 인해 BL 외 5개 국립 및 대학도서관도 대행기관을 통해 요청시 납본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도 납본 대상 자료의 유형에 따라 BnF 외에 프랑스국립영화센터와 국립시청각연구소에도 분산하여 납본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문화유산법>과 <법정납본도서관법(Legal Deposit Libraries Act 2003)>에 의해 국가대표도서관의 납본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그 외 도서관과 기관들의 납본 기능과 영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별도의 납본 관련 법률과 협약 등으로 인해 납본 업무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납본 수행에서 혼란과 중복을 야기하고 있어 국내 납본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적인 납본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윤희윤, 2003; 2014; 이승민, 2019). 향후 납본법 제정시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분산형 납본체제를 벤치마킹하면서 국내 납본 관련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국내 상황에 적합한 납본제도를 마련하고 납본기관별 납본자료의 유형이나 부수 등을 법령 조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곽승진 외 (2013).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161-179.

22) 현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법률에서 납본 또는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과 중복 납본 또는 제출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후단에 “단, 타 법률에서 국가적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등을 추가할 수 있다.

- 김나영, 오일석 (2016). 도서의 납본과 보상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513-532.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513>
- 노영희 (2009). 국내외 국가도서관 납본절차 분석을 통한 납본업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73-189.
- 서혜란 (2003). 디지털자료의 납본과 보존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 정보관리학회지, 20(1), 373-399.
- 윤희윤 (2003). 한국의 납본제도 개선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4), 24-52.
- 윤희윤 (2014).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수집력 강화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5-26.
- 이승민 (2019). 국회도서관 납본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73-93.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073>
- 이재원 (2019). 1960년대 정부 지원 정책 부재로 인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정체(停滯)에 관한 고찰.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2), 51-6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2.051>
- 최재황, 곽승진, 김정택 (200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209-232.
-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2019). GUIDE DU DÉPÔT LÉGAL: destiné aux établissements dépositaires du Dépôt légal imprimeur. Paris: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 Boring, Nicolas (2018). France. Digital Legal Deposit in Selected Jurisdictions. Washington D.C.: The Law Library of Congress.
-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2016). Deposit of Electronic Publications with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Guide to requirement for publisher. Canberra: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 Lariviere, Jules (2000).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Legislation.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UNESCO).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Jae-Hwang, Kwak, Seung-Jin, & Kim, Jeong-Taek (2009). A study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209-232.
- Kim, Na-Young & Oh, Il-Seok (2016). A study on improving methods of legal deposit



- and compensation of book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513-532.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513>
- Kwak, Seung-Jin et al. (2013). A study on legal deposit guidelines for online digital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161-179.
- Lee, Jae-Won (2019). A study on the stagnation of Korean school libraries in 1960s due to the absence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2), 51-67.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9.30.2.051>
- Lee, Seungmin (2019). A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for legal deposit in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South Korea: focusing on thesis and disser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4), 73-93.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073>
- Noh, Younghee (2009). Suggesting the reasonable legal deposit operating plan through analyzing the legal deposit process of national libraries of the wor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173-189.
- Suh, Hey-Ran (2003). Legal deposit and preservation of digital materials in various count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 373-399.
- Yoon, Hee-Yoon (2003). A study on the reform model of legal deposit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7(4), 24-52.
- Yoon, Hee-Yoon (2014). A study of the strengthening legal deposit collection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5-26.